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81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 50% 범위 내 경감 근거 규정 신설(김태호의원안)	3

I . 개요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81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5.

(3) 회 부 일 : 2025.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 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 50% 범위 내 경감 근거 규정 신설(김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세율(제8조) ○ 증류주류: 100분의 72(제1항제3호) <u><신 설></u>	☐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 50% 범위 내 경감 근거 규정 신설 ○ (현행과 같음) ○ <u>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제4항)</u>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김태호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14)

☐ 개정안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서 50% 세율경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현행 「주세법」은 증류주류에 대하여 과세표준¹⁾을 주류 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의 72%를 세

1) 「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율²⁾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주세는 간접세³⁾이면서 소비세이며, 주정·탁주·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세율체계임.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 현황]

주류의 종류		주세율
주정		57,000원/kl (알코올 9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마다 600원 가산)
발효주	탁주	44,400원/kl
	맥주	885,700원/kl
	약주·과실주·청주	30%
증류주류		72%
기타주류		10%~72%

주세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제정시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도입하였고, 1967년에 세수증대를 위해 주정·탁주·약주를 제외한

2)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3) 입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 조세,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를 말함.

주류는 종가세로 전환하였으며, 1972년에 탁주·약주도 종가세로 전환하여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는 종가세였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을 종량세로 전환하여, 현재 주정·탁주·맥주는 종량세이며 증류주를 비롯한 기타 주류는 10~72%의 세율로 종가세로 적용하고 있음.

[주세법 연혁]

연혁	주요 내용
1949년	주세법 제정시 종량세 과세체계 도입
1967년	세수 증대를 위해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한 주류는 종가세 체계로 전환
1972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제도로 변경
2020년	탁주·맥주의 종량세 전환으로 현재 주정·탁주·맥주는 종량세, 기타 주류는 종가세임

특히, 증류주류는 주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고 격차가 상당히 컸으나 2000년에 같은 세율로 통일함.

[증류주류 세율 연혁]

구분	1974년	1990년	1993년	1995년	2000년
증류식 소주	35%	50%			72%
희석식 소주	35%				
위스키	200%	150%	120%	100%	
브랜디	150%		120%	100%	
리큐르	-	50%			
일반증류주	-	80%			

□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에는 72% 고세율을 부과하고 증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류 고급화를 위해 좋은 재료를 사용해 생산단가가 높아지면 출고가 인상분이 그대로 세 부담에 반영돼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한편, 주류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⁵⁾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⁶⁾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세율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제품의 품질 개선 및 시장 다변화를

4) 개정안의 제안이유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지원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현행 증류주에 대한 주세 구조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출고가의 72%)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원가 절감, 전국 유통망 확보, 대형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고정비용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 가격 경쟁에서 밀리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음.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할 때 동일 세율 구조가 오히려 시장 경쟁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감경은 제품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유통업체 입점 확대,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실질적인 판매 채널 확보로 이어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제품 개발이나 고급화 전략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은 제품 다양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

현재 증류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출고가의 72%에 달하는 높은 세율로 인해 R&D 투자나 원재료 고급화, 숙성설비 확충 등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제품의 품질 고도화와 소비자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시장 내 차별화 전략 추진에 큰 장벽이 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세부담이 경감될 경우, 감면된 세금만큼의 재원을 기술개발, 품질 개선,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등 내부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프리미엄 증류주 및 전통주 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봄.

셋째, 현행 「주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⁷⁾에서도 주류의 세율을 조정 또는 경감하는 규정이 있다는 입법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먼저, 탁주 또는 맥주 세율 조정의 경우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7) 「주세법」

제8조(세율)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전통주 세율 경감의 경우는 생산량 제한과 문화적 가치를 복합 반영한 정책으로 경감 대상은 발효주류(연간 1,000kl 이하)와 증류주류(500kl 이하)로 구분되며, 직전 연도 반출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⁸⁾

이는 UNESCO 무형문화재 지정 등 문화적 특수성을 근거로 동종 상품 구분이 가능하며, 프랑스 AOC(원산지 통제)⁹⁾ 제도와 유사한 지역 특산물 보호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감면 혜택이 실제로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 등 내부 투자로 이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감면된 세금이 실제로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 등 내부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일부 기업은 감세로 확보된 자금을 마케팅 또는 인건비 충당 등

8) 「주세법 시행령」

제7조(세율)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1천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9)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는 “원산지 명칭 통제”로 번역되며, 특정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전통 제조방식을 준수한 제품에만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단기 운영비용에 집중 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다소 괴리가 생길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이나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세수 손실만 발생하고 산업 발전은 미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경감은 국내 주류산업 보호 목적을 위한 수입주류 차별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WTO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999년에 EU와 미국이 한국의 주세 체계를 GATT 제3조(내국민대우)¹⁰⁾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가 동종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당시 한국이 소주에 35%, 위스키에 100% 세율을 적용해 수입주를 차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음.¹¹⁾

따라서,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 중소기업 증류주 제조사에 대한 세율 경감이 수입증류주 대비 우대 조치로 작용할 경우, 동일 사례 재발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증류주류 제조 면허사업자 중 전통주 면허 보유 비율이 83.3%에 이르러 대체로 세율 경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

10) (WTO 내국민대우 원칙) 특정 물품을 물리적 특성 등에 따라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세율체계를 달리 적용함에 따른 국내산-수입산 간 차별금지 원칙

11) 그 결과, WTO는 "소주와 수입 증류주는 직접적 경쟁관계"라 판단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에 모든 증류주 세율을 72%로 통일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였음.

가 필요함.

[2024년 증류주류 제조면허사업자 중 전통주 면허사업자 현황]

(단위: 개)

구분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 증류주	리큐르	합계 (%)
전통주	민속주	-	6	-	-	5	3	14 (1.6)
	지역 특산주	-	216	-	-	355	138	709 (81.7)
전체		22	244	16	9	390	187	868

자료: 국세통계연보(2024)

현행 「주세법」¹²⁾에서는 전통주 세율 경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류주류 제조 면허사업자 중 83.3%가 전통주 면허사업자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의 주세율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¹³⁾

12)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제8조(세율)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3) 개정안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한 증류주류에 적용하는 세율을 정상 수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경우 주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율감감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증류주의 출고가격 등에 대한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내 증류주류 제조자 중 다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이 제조한 국산 증류주류만 경감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주류에 대한 차별조치로서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증류주 면허사업자 중 전통주 면허사업자는 대체로 세율 경감의 대상이 되므로 동일분야 지원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지역농산물 사용 등의 요건 충족시에만 주세 감면 혜택이 있는 전통주와 달리 수입농산물 사용 등에 제한이 없는 개정안의 증류주류 주세 감면은 전통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